

의견서

- 수 신 :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님
- 참 조 : 출입국관리법 법안심사 담당 보좌관님
- 발 신 : 진보네트워크센터
- 문 의 : 신훈민 변호사 (02)701-7687, 010-9498-5580
- 분 량 : 3쪽
- 일 자 : 2016. 1. 6. (수)
- 제 목 : 출입국관리법 개정안(의안번호 : 13847)에 관한 의견

출입국관리법 개정안(의안번호 : 13847)에 관한 의견

I. 안 제3조 및 제6조

(1) 현행

자동출입국심사를 받으려는 국민은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여 지문 및 얼굴정보를 사전에 등록한 후 출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

(2) 개정안 내용

자동출입국심사 활성화를 위하여 지문 및 얼굴정보의 사전 등록절차를 생략하고, 관계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 지문 및 얼굴정보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여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가능

(3) 개정안의 문제점

- 개정안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보유한 국민의 지문 및 얼굴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함.

-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함. 개

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서는 1)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, 2)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, 3)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친 경우 등의 경우에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이 가능하다고 하였음.

- 안 제3조, 제6조가 신설되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겠지만, 개보법 제18조의 취지를 살피건대, 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소관 업무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둘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 함.

-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편의를 위하여 경찰청으로부터 지문정보 등을 제공받는 것은 소관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. 현행 제도 유지로도 소관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음.

- 더군다나 경찰청이 보유하고 있는 지문정보에 대해서는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. 이러한 지문정보를 출입국심사 과정에서 활용하겠다는 것은, 전 국민의 지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외면한 채 오로지 행정적 편의를 위해서 민감한 개인정보인 지문정보를 활용하겠다는 것임.

II. 안 제78조

(1) 현행

사증 관련 심사와 출입국사범조사를 위하여 범죄경력자료, 수사경력자료를 조회하고 있음.

(2) 개정안 내용

가. 출입국심사(범죄경력정보·수사경력정보, 여권발급정보·주민등록정보 또는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)

나.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심사(범죄경력정보·수사경력정보, 관세사범정보, 여권발급정보·주민등록정보, 사업자의 휴업·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, 납세증명서,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또는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현황 및 행정처분 정보)

다. 외국인체류 관련 각종 허가 심사(범죄경력정보·수사경력정보, 여권발급정보·주민등록정보, 외국인의 자동차등록정보, 사업자의 휴업·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,

납세증명서,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또는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현황 및 행정처분 정보)

라. 출입국사범 조사(범죄경력정보·수사경력정보, 외국인의 범죄처분결과정보, 관세 사범정보, 여권발급정보·주민등록정보, 외국인의 자동차등록정보, 납세증명서, 가족 관계등록 전산정보 또는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현황 및 행정처분 정보)

마. 사실증명서 발급(여권발급정보·주민등록정보 또는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)

※ ‘가~마’항까지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관계 기관에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

(3) 개정안의 문제점

- 관계 기관에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해,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됨.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3에서 관계 전산망을 이용할 수 있게 하였으나, 동법 제13조의4에서는 이러한 경우 사전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,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있음. 그러나 안 제78조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굉장히 포괄적인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화 하였음.

-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개인정보보호원칙으로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할 것을 명시함.

- 안 제78조에서 제공 받고자 하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각종 목적 또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음. 서로 상이한 목적 하에서 제공 받는 개인정보를 한 조문으로 규정함으로써 인해 불분명한 목적 하에서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다른 목적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음. 끝.

2016년 1월 6일
진보네트워크센터